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5.

발 의 자 : 안상훈 · 김성원 · 백종현
김 건 · 윤재옥 · 이만희
고동진 · 박덕흠 · 김은혜
이종배 · 박성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, 의료기관,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. 그런데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·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17제1항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17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
보건진료소(「의료법」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)

16.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
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
(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
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판결이
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1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② ~ ⑫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·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(「의료법」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) 16.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(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) ② ~ ⑫ (현행과 같음)
--	--